

인천지방법원 2022. 9. 28 선고 2021가단242948 판결 [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]

---

## 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자필

변 론 종 결 2022. 9. 7.

판 결 선 고 2022. 9. 28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,5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2. 5.부터 2022. 9. 28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9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5,175,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2. 5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중국산 컨베이어 조립 및 설치공사, 포토센서 설치 등의 전기공사에 따른 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 
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, ① 2020. 10. 11.부터 2020. 10. 13.까지 피고 사업장에서 중국산 컨베이어를 조립 및 설치하고, 대금 420만 원이 발생한 사실, ② 2021. 1. 24.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피고 사업장에 설치된 컨베이어에 포토센서를 설치하는 등의 전기공사를 작업하게 하고 공사비 35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금 합계 455만 원(= 420만 원 + 35만 원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2021. 1. 20.자 공사계약에 따른 청구에 대한 판단

#### (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21. 1. 20. 피고와 사이에 컨베이어 제작 및 납품계약(이하 ‘이 사건 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이에 따라 원고는 상당 부분 제작을 완료하였는데, 피고가 2021. 2. 18.경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,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피고가 위치한 전남 순천에 수차례 방문하는 등 출장비용 합계 1,955,000원,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차 계약금 2,700만 원, 설계도서 작성비용 1,242만 원 및 기성고 39,250,400원을 합한 80,625,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#### (2) 기초사실

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. 1. 20.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컨베이어 제작 및 납품계약서가 작성된 사실, 피고측에서는 당시 피고에서 재직 중이던 D 상무이사가 위 계약서에 피고의 법인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#### (3) 이 사건 계약 체결 여부

피고는, D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

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하였으므로,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갑 제2 내지 8, 12, 14, 15, 16호증의 각 기재, 증인 D의 증언,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원고는 2020. 7.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지속하여 온 점, ② 원고가 2021. 1. 20.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해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, 이 사건 계약에 관해 원고와 그동안 협의를 하고 실무를 진행하던 D는 피고 대표이사의 동생이자 피고의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F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해 보고하였으며, F는 계약 날인에 관한 D의 요청을 2~3회 거절하다가 나중에 이를 승인하였고, 이에 D는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의 법인도장을 날인한 점, ③ 비록 피고의 대표이사는 E이지만 평소 F가 피고의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고, 피고의 직원들 사이에서 사실상의 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, F도 2021. 2. 9. 원고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최종결정권자라고 말하는 등 F가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이거나 적어도 E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, ④ D가 E 또는 F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였다고 봄은 통상의 업무 관례상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데, 그러한 점을 납득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, ⑤ 피고는 2021. 2. 1.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일시보류를 요청하면서 피고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만을 언급했을 뿐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한 바 없고, F도 2021. 1. 29. 원고 대표 G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량 변경 등을 요구하였을 뿐 이 사건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#### (4) 청구금액에 대한 판단

(가) 출장 등 소요비용 1,955,000원, 설계비용 1,242만 원, 기성고 39,250,500원  
살피건대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거나 해당 금원의 비용이 원고 주장과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(게다가 출장 등 소요비용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체결이 확정적임을 전제로 한 금원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지출로 보이므로, 이를 피고가 부담할 성질의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고, 설계비용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비용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의 항목

및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, 기성고의 경우 원고가 별도의 기성고 감정 등을 신청한 바 없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기성율을 인정하기 부족하다). 따라서 원고의 위 항목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(나) 계약금 2,700만 원

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이 1억 8,000만 원이고, 그 중 2021. 1. 31.부터 2021. 2. 5.까지 사이에 대금의 15%인 2,700만 원을 1차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한편, 계약금의 규모 및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계약금은 선급금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,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며,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바(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4다11574, 11581 판결 등 참조)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약금이 중도 해지로 인한 기성고와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#### 다. 소결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1. 2. 5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. 9. 28.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 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진수

